

4. 開發利益還收에 관한 法律施行令 및 施行規則中 改正(案) 立法豫告

建設交通部公告 第1996-186號 1996. 6. 20

개정안의 주요내용

- 가.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됨에 따라 개발사업지역에서 부과한 개발부담금중에서 시·군·구에 귀속되는 부담금의 1/2을 시·도에 배분되도록 하여 시·도가 이를 당해 개발사업 지구내의 학교용지 확보비용으로 사용하도록 함.
- 나. 연접한 토지를 개발부담금 부과대상규모 이하로 분할한후 시기를 달리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여 면적이 합산되는 경우에, 최초 개발 사업시행후 5년이 경과된후 시행하는 사업은 면적이 합산되는 연접시행사업의 대상에서 제외함.
- 다. 건축물의 건축으로 지목변경이 수반되어 부담금이 부과된후 부과당시의 종전지목으로 환원되는 경우에는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함.
- 라. 건축행위로 인한 허가면적중 일부만이 지목변경되는 사업의 경우 전체 허가면적에 대하여 부담금을 부과하던 것을 실제로 지목이 변경된 부분에 한정하여 부과하도록 함.
- 마.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으로 자동차경주장, 승마장, 썰매장, 전용여객자동차터미널 및 전용화물터미널사업을 추구하고,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하는 이주단지 조성사업, 농수산물물류센타를 부과대상에서 제외함.
- 바. 부담금의 정산결과 추가로 부과하게 되는 부담금의 납부기간을 현행 15일에서 30일로 연장함.
- 사. 주택의 분양가를 기준으로 종료시점지가를 산정하는 경우를 현행은 분양가 중 토지가격으로 산정하는 경우와 분양가에 표준건축비를 뺀 가격으로 산정하는 경

우로 이원화 되어 있어 형평에 맞지 아니하므로 이를 분양가에서 표준건축비를 뺀 가격으로 종료시점 산정기준을 통일함.

아. 부담금의 연·분납이나 현금대신 토지로 물납하는 경우의 신청기간을 현행의 60일에서 120일로 연장함.

자. 부과기관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의 인가 등을 한 경우에는 납부의무자에게 부담금 부과대상 및 사업종료후의 자료제출사항등을 미리 통보하도록 함.